

#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30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무인 시 지명위원회의 목적, 설치, 구성 기준, 임기, 위원의 해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, 위원장의 직무 및 부재시 대행 규정과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필요한 회의 개최 요건 및 소집, 의결정족수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내실있는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근거 법령 및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위원회의 설치·구성 기준 및 운영 규정(안 제2조~제9조)
-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비치 사항 규정 (안 제11조)
- 위원장 운영세칙 규정(안 제12조)

## 전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1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2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입법예고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9. 20. ~ 10. 10.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3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## [붙임 1]

#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에 따라 안산시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· 구성)** ① 지명의 제정, 변경, 폐지와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: 업무담당 과장, 해당지역 동장

2. 위촉직

가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,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**제3조(임기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형사소추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명의 제정, 변경, 폐지 또는 조정
2. 필요시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
### 3.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

- 제8조(지명의 조사)**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)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.
-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견 청취 등)**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5. 그 밖에 중요한 사항

**제12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 「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설치

된 안산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토지정보과
입 안 자	실·과장	토지정보과장
	직위·성명	고 재 준
	담당·팀장	토지정보팀장
	직위·성명	김 성 현
담당자		김 인 중
성명·전화		(행정 2639)

#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308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. 12. 4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, 안산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,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당연직 위원에 해당 동장 삭제 (안 제2조제4항)
-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에 관한 조항 삭제 (안 제6조제2항)

## **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**

안 제2조제4항제1호 중 “과장, 해당지역 동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2조(설치 · 구성) ① ~ ③ (생 략)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제2조(설치 · 구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 ④ ----- ----- -----.  1. 당연직: 업무담당 <u>과장</u> , 해당지역 동장 2. (생 략) ⑤ · ⑥ (생 략)
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생 략)  <u>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</u>  <u>③ ~ ⑤ (생 략)</u>	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개정안과 같음)  <u>&lt;삭 제&gt;</u>  ② ~ ④ (개정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